『대학기술경영촉진(TLO혁신형)』 사업 공고 FAQ

('24.05.31,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Ⅰ. 신청 자격사항 관련

Q1-1. 전담인력(PM)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참여 개수, 고용 형태는?

A. 본 사업은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인력(PM)을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별 1인을 배정해야 합니다. 전담인력의 프로젝트 참여 개수는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고려하여 참여개수 배정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업무지원 가능한 자로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1-2. 2024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수행기관(주관, 참여)사업신청 가능 여부?

A. 2024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2024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LO혁신형)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3.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및 복수 개 설정 가능 여부?

A.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주관기관(산학협력단 TLO)과 참여기관(기술지주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동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또는 주관기관 출자 연합 기술지주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이 안내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참여기관에 한하여 복수 설정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단, 참여기관이 복수의 과제에 신청한 경우 평가 시 신청기관의 역량을 평가 받으시게 됩니다.

Ⅱ. 사업비 집행 관련

Q2-1. 예산 편성방향의 방향 및 비중은? (주관, 참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A. 본 사업의 연구비 사용관리 책임 권한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장 등)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및 중점지원 내용 등 고려하여 자율적 예산 편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체별 예산 편성 비중은 없으나, 예산 편성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2-2. 예산 편성에 따른 참여주체별 예산 집행 방법은?

A.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참여 주체별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방법은 IRIS,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활용·운영 예정입니다.

Q2-3. 연구개발비 편성에서 인건비 집행 상한액이 있는지?

A.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편성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로 연구개발비 편성 가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기내용에는 인건비 집행 상한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2-4. 연구개발비 편성에서 간접비(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한정) 집행 비율은?

A. 본 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안내드린 연구개발비 편성 가이드에 간접비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허출원, 등록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간접비는 각 기관의 간접비 고시 비율에 맞춰 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5. 대학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납부 방법은?

A. 대학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행정기관에 납부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Ⅲ. 사업목표 및 성과 관련

Q3-1.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문의

A. 본 사업의 시행공고문의 2쪽에 명시된 <성과지표(안)>의 "O"표시는 해당연차에 필수적으로 성과를 창출해야하며, 신청기관의 역량 등 고려하여 목표건수는 자율 제시 가능합니다. 단 제시된 목표 등은 평가 시 신청기관의 역량 및 파급효과 등 평가 받으시게 됩니다.

Q3-2. 프로젝트 기술사업화와 대학기술경영촉진활동 간의 성과 중복 인정 여부

A. 본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정량성과는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성과와 대학기술경영촉진활동 성과로 구분하여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성과 중복 기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대학기술경영촉진활동 성과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외 대학에서 창출한 성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3-3. 중대형 기술이전의 정의 관련하여, 1개 기술에 대하여 2개 수요기업으로 각각 0.5억씩 합산 1억원의 기술이전 실시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본 사업에는 1억원 이상 기술이전 수입료 기준에 따라 중대형 기술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기 기준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준으로 복수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수입료 합산 실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Q3-4. 기술이전형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시, 연구자가 자신의 교원창업으로 기술이전하는 것도 가능한지?

A. 본 사업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목적은 딥테크 등 파급력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하여 연구자가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민간전문기관 등 대내외 협력을 통해 2+1년간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연구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은 기술사업화 프로젝트(5개 내외)를 구성하는데 있어 유망기술을 발굴 및 협업계획, 혁신성과 창출 등 전략수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본인의 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기술이전형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상기 사업 추진 목적과 내용, 선정평가 항목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작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기관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Q3-5. 기술창업형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 시, 기술창업 실행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이전 성과도 인정 가능한지?

A. 공공기술 활용·기술도입 등을 통한 자회사(실험실) 창업 시 수반되는 기술이전 성과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이전형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와 달리 기술창업형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는 창업성과 중심으로 프로젝트 운영 및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부분에 연구계획 및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Ⅳ. 선정평가 관련

Q4-1. 대략적인 선정평가 일정은?

A. 본사업의 접수마감일은 6.14이며, 선정평가는 6월말~7월1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선정평가계획안 수립에 따라 자세하게 안내 예정입니다.

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Q5-1. 전담인력(PM)은 정규직이어야 하는가? 주관기관인 산학협력단에서만 참여할 수 있나?

A. 전담인력(PM)은 정규직 등 사업기간동안 안정적 업무 가능자이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주관, 참여)에서 전담인력 구성 및 참여 가능합니다.

Q5-2.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의 참고. 연구개발비 편성 가이드(안) 이미지에서 주관(+참여)에서 인건비 집행은 전담인력(PM)만 집행 가능한가?

A. 연구개발계획서 상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등 제시된 핵심 인력 모두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업무지원, 행정지원 등 연구지원 인력은 인건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Q5-3.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총 3년(2+1) 연속 수행해야 하는것인지?

A. 동 사업의 연구개발기간(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은 2+1년으로, 해당기간에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활동 등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내외 연구 환경변화 또는 성과 조기달성 등 과제 수행이 불가 할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한 기술 POOL을 활용하여 중도 프로젝트 변경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변경관련하여 연차점검, 단계평가 등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 진행 예정입니다.